

계 량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11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항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신고란 사인이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학설과 판례는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행정요건적 신고)로 구분하고 있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40조¹⁾에 따라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

1)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의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실질적 검토를 거쳐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함²⁾.

현행법 제9조³⁾는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2)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영업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 중임⁴⁾.

개정안은 이러한 법령 정비의 취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소상공인 등의 영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다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의 전환 여부에 대하여는 계량기 수입업 신고 의무 위반 시 현행법령상 제재수준 및 개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참고자료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 참조

먼저 입법례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현행법 제72조제3호⁵⁾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신고의무 위반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계량기 수입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 제9조제4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 정비를 통한 행정 절차의 단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법률 연혁상 계량기 수입업은 처음부터 신고제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된 점

5)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 ~ 16. (생략)

등을 감안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계량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40호, 1973. 1. 15., 일부개정)]

제15조 (판매업·계량증명업의 등록) ①계량기의 판매(판매의 중계를 포함한다) 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량기를 수입하여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 각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하되, 재등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는 해당 영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이고, 법률에 인력, 시설, 장비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자료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⁶⁾

■ 추진 배경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등 추진 일환
 - * **국정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 * **민생토론회10-1-④**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법령 정비 관련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 중요

2024. 2. 8.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10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중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생활규제 개선
 - 창업·영업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기준(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교육부담 완화)**에 대한 개선 추진

■ 정비 방향

-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 완결적 신고로 전환하여 영업자의 추가적 부담 완화
- **(보수교육 부담 완화)** 영업자나 종사자 등의 과도한 법정 교육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시설·장비 기준 완화)** 인허가·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 비용 부담 완화

6) 자료: 법제처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동 개정안은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수리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붙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생략)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